

LINA General Insurance, an independent affiliate of LINA Life Insurance, is the brand name for ACE American Fire and Marine Insurance Company Korea, a Chubb Company.

화물배상책임보험 보험금청구 구비서류안내

구비서류

- 배상책임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 Master 및 House B/L (선하증권) / AWB (항공화물수취증) 및 이면약관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및 수량/중량명세서 (Packing list)
- 화물의 손상사진
- 화주 또는 적하보험자/변호사로부터 받은 배상요청관련 공문
-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지시서 및 기사에서 발행한 운임 Invoice (책임운송구간 표기)
- 화주로부터 받은 Claim Notice (항공화물의 경우 화물수취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은 Claim Notice)
- 감정인보고서 (Survey Report)
- 협정서 (Convention, Damage Report 등)
- 적하보험자/변호사로부터 배상요청을 받은 경우
- Letter of Subrogation
- 잔존물매각증명서류 또는 폐기확인서
- Letter of Subrogation
- 잔존물매각증명서류 또는 폐기확인서

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보험사고 발생시 아래의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시고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 사고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배상청구에 대한 지급이나 손해에 대한 동의, 관련 발생비용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사고발생시 당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피보험자의 지급불능, 즉시지불불가 또는 회수불가능으로 기인된 배상청구나 손해 (피보험자의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지불 또는 회수하기를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됨)
2. 피보험자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청구
3. 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소유권이 있는 임원의 부정/사기/범죄행위/부작위에 기인한 배상책임/비용
4. 타보험증권이나 증명서로부터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비용
5. 전쟁, 침략, 적군의 행동, 적대행위(전쟁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내전, 반역, 혁명, 전복, 군사 또는 찬탈한 무력, 정부·공공기관·지방정부의 명령에 의한 몰수·국유화·징발·재산의 파괴·손상으로 발생하거나, 이러한 행위의 영향으로 직·간접으로 발생한 손해
6.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연소에 의한 핵폐기물에서 나온 방사능에 의한 이온방사/오염 및 폭발성 핵부품이나 핵물질의 방사성, 독성, 폭발성 또는 기타 위험한 재물에 대한 원인으로 직·간접으로 발생한 손해
 - 재산에 대한 손해, 파괴 또는 손상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비용 또는 간접손해
 - 이들의 특성에 의한 모든 법률상의 배상책임
7. 음속 또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비행기나 비행기구의 과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파괴 또는 손상
8. 피보험자가 법적책임을 지는 사람이나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징벌적 또는 가중된 손해
9.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통제하에 있거나 운송, 보관계약상 피보험자가 책임있는 화물에 대한 손해, 손상, 운송지연으로 발생한 배상

LINA General Insurance, an independent affiliate of LINA Life Insurance, is the brand name for ACE American Fire and Marine Insurance Company Korea, a Chubb Company.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수행하기 이전에 외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보를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에 따라 외부 손해사정사의 동의, 재선임 요청, 거절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선임요청에 대한 동의 및 부동의 기준)

- ① 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통보를 한 경우에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한다.
 - 가. 보험업법 제 2 조 제 19 호에 따른 전문보험계약자의 계약. 다만, 실손의료보험계약을 포함하는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 보험 상품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계약.
 - 다.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사정사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라.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 의사를 통보한 손해사정사가 건전한 금융질서(보험사기 의심, 부당한 민원 유발, 변호사법 위반 등)를 해칠 소지가 있는 경우.
 - 마. 손해사정사가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 관련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바. 소비자가 선임 요청한 손해사정사가 당사의 손해사정 보수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사. 사. 소비자가 선임 요청한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아.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인 경우.
 - 자. 계약 체결에 하자가 있어 판매 조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차. 기타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여 조사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선임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 등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유선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설명·안내를 한다.
 - ④ 회사가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동의 결정 여부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외부 손해사정사 선임 통보 이후 3 영업일 이내 선임 관련 동의 여부를 안내하며, 회사가 재선임 요청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른 손해사정사를 재선임해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 / 병원방문 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 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LINA General Insurance, an independent affiliate of LINA Life Insurance, is the brand name for ACE American Fire and Marine Insurance Company Korea, a Chubb Company.

보험금 청구 지급 관련 문의

- 보험금 청구 업무 담당자 전화 02-2127-244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시 보상처리 담당부서 및 담당자가 지정됩니다.